#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종곤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091

발의연월일: 2017. 4.

발 의 자: 김종곤 의원

찬 성 자: 김달호의원, 김해선의원

문복란의원, 박정기의원 엄경석의원, 윤종욱의원

은복실의원, 이상철의원

이성수의원, 임종기의원(10명)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의장, 부의장 선거의 1, 2차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2차 투표의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고 있는 것을 다선의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의장단의 의정경험 중요성을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의장 · 부의장 선거(안 제6조)

- 1) 의장·부의장 선거의 결선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가 득표수가 같은 경우 당선자 결정방법 변경
  - (현행)연장자를 당선자로 함 ⇒ (변경)다선의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함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지방자치법」제71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2017. 3. 31. ~ 4.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규칙 제 호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연장자"를 "다선의원을, 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장·부의장 선거) ①·②	제6조(의장·부의장 선거) ①ㆍ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	③
표수가 같을 때에는 <u>연장자</u> 를	<u>다선의원을, 다선의</u>
당선자로 한다.	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
	<u>장자</u> 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 관계법규>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 보고서

2017. 4. 28. 의회우영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7. 3. 31. 김종곤 의원

나. 회부일자: 2017. 4. 11.

다. 상정일자: 2017. 4. 19.

(제231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 2. 제안개요

가. 제안설명: 김종곤 의원

나.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의장, 부의장 선거의 1, 2차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2차 투표의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고 있는 것을 다선의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의장단의 의정경험 중요성을 반영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의장 · 부의장 선거(안 제6조)

- 1) 의장·부의장 선거의 결선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가 득 표수가 같은 경우 당선자 결정방법 변경
  - (현행)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 ⇒ (변경) 다선의원, 연장 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함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71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7. 3. 31. ~ 4.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5.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

○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장·부의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다선의원'을, 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의정 경험이 많은 의원을 당선자로 하여 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자하는 것임

**6. 질의 및 답변:**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